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9월 11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3년 8월 21일
- 나. 제안자: 최세진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8월 28일
- 라. 상정일자: 제29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9. 11.)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최세진 의원)

□ 제안이유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용어에서 ‘보유’라는 긍정적 의미의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가치 재정립을 위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 전체의 ‘단절’ 용어를 ‘보유’로 변경하고 인용조문 정비 (안 전체)
- 나.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다.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 신설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

나. 예산조치: 필요 시 편성

다. 해당부서: 가족정책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8. 28. ~ 9. 1.)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개정취지

- 현행 우리 구 조례가 사용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¹⁾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경력보유여성”이라는 긍정적 용어로 전환하여 여성이 가진 역량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전체에서 부정적인 의미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긍정적인 의미의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조례의 제명 또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8조에서는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하기 위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부칙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2항 제6호와 제19조제3항의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조례나 규칙의 제명이나 용어가 바뀐 경우 그를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나 규칙의 해당 부분의 정리를 위한 것임

※ 부칙규정: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출처: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부칙으로 다른 조례나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관련 자치법규를 동시에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을 기할 수 있고, 관련 자치법규를 별도로 입법·심의하는 번잡과 비능률을 피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개정의 시차(時差)에 따른 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 현행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하지만 ‘경력단절’이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활동 및 경력이 연속되지 아니하는 상태”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을 위축시키고 경력단절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의 가치를 경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었고
- 본 조례안은 이를 ‘경력보유’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이 가진 돌봄경험의 가치를 역량으로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였고²⁾,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2) 타 자치단체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규명
1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군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4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6	경기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7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
12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군 경력보유 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우리 구 역시 선도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경력보유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경력보유여성’은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여성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의 당위성이나 특수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